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9. 3. 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(주)그린스케일은 2015년 전자저울 형식승인을 취득한
정식사업자임 (서울경제신문 3.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(주)그린스케일이 개발한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「계량에관한법률」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득한 바, 정식사업이 가능합니다.
- 3월4일자 서울경제신문 <朴정부 '임시허가 1호'가 '규제샌드박스' 또 신청한 사연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 내용

- '정식허가 무산... 불법사업자로'
 - '결국 (주)그린스케일은 임시허가 만료일인 2017년 10월 11일까지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다'
 - '담당부처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진 탓'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(주)그린스케일의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「계량에관한법률」에 따라 2015년 9월 25일 형식승인*을 취득하여 정식허가를 받았음

* 계량기명: 전기식지시저울 / 형식승인번호: 제KTC-C-15-9호

- (주)그린스케일은 전자저울 형식승인 기준에 데이터 전송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,
- 국표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,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였음

※ 문의 :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 장 (043-870-5510),
이동진 연구사 (043-870-5515)